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사항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추가함(안 6.가.)

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가. 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13. 5. 1.부터 각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출력하거나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
-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 3)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6. 징수절차</p> <p>가. 2013. 5. 1.부터 각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서(을지)에 등기신청 수수료금액을 기재하고, <u>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u>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6. -----</p> <p>가. ----- -----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출력하거나 발급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p> <p>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p> <p>3)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p>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